

2026년 제1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한시임기제 9호(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1 임용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기관
방호직 (한시임기제 9호)	1명	채용일 ~ 2027.10.31.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중구 소재)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방호직	한시임기제 9호	○ 청사방호 및 민원인(내·외국인) 질서유지 업무 ○ 보호외국인 및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의 계호 업무지원 ○ 민원안내 기타 출입국관리 행정 업무 지원 ○ 사무보조(시설, 물품 등)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11.20.) 기준]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1하여 응시하십시오. (이력서 제목 옆에 명시)
 - 예시: 이력서(경력), 이력서(학위)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채용분야	자격 기준	
한시 임기제 9호 (방호)	경력 기준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 청사 방호, 보안, 경비 등 근무경력 * 군경력 미인정
	학위 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
		【직무분야 관련학과】 경찰, 경호, 경비 관련 학과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9.) 기준]

구 분	내 용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관련(방호·경비) 분야에서 최근(2016년 이후) 근무한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개인사업자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방호·경비분야 근무 경력 ※ 군 경력 미인정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 응급구조사(1급, 2급)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12.1.1. 이전의 경우 1급만 적용),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종류별 차등우대,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 응시경력 요건(6개월)은 우대요건 경력 미산입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방호·경비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재직증명서에 한함)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예시 : 방호업무, 경비업무)를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예시:[별지 제8호 참고])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반드시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경력이 불명확(담당업무 미기재 등)할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10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응시번호 순으로 개별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0. 30.(금) ~ 11. 9.(월)	'26. 11. 4.(수) ~ 11. 9.(월)	'26. 11. 16.(월)	'26. 11. 20.(금)	'26. 12. 1.(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1. 4.(수) ~ 11. 9.(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48939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7, 교보생명빌딩 7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총무팀 채용담당자(방호직 응시원서 재중)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9호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 별지서식 제10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11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경력기준 응시자는 필수)	○ 별지서식 제12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기준 응시자는 필수)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2027. 10. 31.까지
 - 근무시간 : 주 35시간(월~금), 1일 7시간 근무
 - 보수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지급
 - 보험 가입 및 적용
 - 국민연금·산재보험 : 해당사항 없음
 - 보험사항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본인 희망 시 가입)
-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소득금액증명원 및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발급 방법(hometax)

① 소득금액증명원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로 체크하여 발급)

②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 등에 대한 확인서 제출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폐업회사의 사업자 번호 기재 후 신청)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051-461-3192)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방호직	한시임기제 9호	1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중구 소재)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방호 및 민원인(내·외국인) 질서 유지 업무 ○ 보호외국인 및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의 계호 업무 지원 ○ 민원안내 기타 출입국관리 행정 업무 지원 ○ 사무보조(시설, 물품 등)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공동체 의식 ○ (직급·직렬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협조성, 성실성, 의사소통능력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방호업무에 대한 지식 및 실무능력 ○ 청사 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지식 ○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청사 방호, 보안, 경비 등 근무경력 * 군경력 미인정 ○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학과 : 경찰, 경호, 경비 관련 학과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관련(방호·경비) 분야에서 최근(2016년 이후)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개인사업자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방호·경비분야 근무 경력 ○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 응급구조사(1급, 2급)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12.1.1. 이전의 경우 1급만 적용),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응시수수료 - 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4호 작성(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5호 작성(A4 3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6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7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8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9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10.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10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1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11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12.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서류	○ 병역사항 포함
13. 경력(재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경력기준 응시자는 필수) ○ 이력서 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u>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u> (재직증명서에 한함)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대표자 인(직인)과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별지서식 제12호 참고
1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학위기준 응시자는 필수, 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5.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직급	방호직 (한시임기제 9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제출유무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2. 응시원서(정부수입인자 5,000원 첨부)(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3.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4.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9.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필수)		* 별지 제9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10. 공정채용 확인서(필수)		* 별지 제10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1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필수)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출	☐ 미제출
1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필수)				☐ 제출	☐ 미제출
13.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경력기준 응시자는 필수)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 제출	☐ 미제출
1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학위기준 응시자는 필수)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모두 제출				☐ 제출	☐ 미제출
1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유무란에 "✓" 표시, 목록의 맨 앞장에 철하고 아래의 순서대로 차례로 편철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

응시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본인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방호)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수입인지(A4크기)의 경우 후면 편철
전자우편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방호)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하고,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⑤ 정부수입인지 :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이 력 서

1. 공 통 사 항

※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응시분야	방호직 (한시임기제 9호)	성 명	
--------	-----------	------	-------------------	-----	--

2. 응 시 자 격 (해 당 란 만 기 재)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이하 회색은 예시이며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작성			
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0.1.1~20.12.31.(질병휴직)	대리	청사방호	전임/비전임 (주○○ 근무)

3. 우 대 요 건 (해 당 란 만 기 재)

가.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응시자격 경력 외 사항			

나. 직무관련 자격증(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반드시 기재

※ 근무경력(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근무기간, 담당업무 등)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경력(재직)증명서는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필수 제출하며, 우대요건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후 작성자 성명 및 서명 꼭 확인할 것

※ 기재 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재직중'으로 작성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반드시 기재
- 근무형태는 '주40시간(전임/통상근무자)' 또는 '시간제(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시간제(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9호 (방호직)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9호 (방호직)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주요 업적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 3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6. . .

응시자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면허증,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정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공무원 채용 관리	결격사유·범죄유무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논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내용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로 재직</u>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u>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u>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

(서명)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방호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휴직기간 별도 기재)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주당 근무시간
	예) 0000.00.00. ~ 0000.00.00.	행정지원과 공무원직	방호 및 경비 업무 수행	주40시간
				시간제 (주20시간)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발 급 자	
2026년 월 일			소속	
기 관 명:			직 위	
주 소: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① 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양식으로 제출 가능(단, 아래 ②,③ 번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음)				
②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당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인, 발급자인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